

## 연구 노트

## OECD 가입과 한국 수산업의 장기발전방향

옥영수\*

1. 머리말
2. OECD 수산위원회의 성격과 활동
3. OECD 수산위원회 가입에 따른 한국 수산업의 영향분석
4. 한국 수산업의 발전방향

### 1. 머리말

우리 나라 수산업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세계 유수의 수산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업관련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크게 기인하였다. 즉 1970년에 불어닥친 1,2차의 석유파동과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원양어업의 침체, 1980년대 이후 UR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업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어업자나 어업정책 입안자 모두는 필연적으로 세계 각국의 수산동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국내적인 정책수립만으로는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현재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업부문에 있어서도 OECD 수산위원회에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OECD 수산위원회에의 가입여부는 가입 후 수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 위원회에 대한 가입여부에 앞서 국가차원의 OECD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수산위원회에 이미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있어서의 OECD 가입영향 고찰은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보다는 장기적인 어업정책 방향수립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OECD 수산위원회의 성격과 활동사항을 살펴 봄으로써 가입으로 인해 우리 나라 수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데 주된 목적이

\* 책임연구원

두어졌다.

## 2. OECD 수산위원회의 성격과 활동

### 2.1. OECD와 OECD 수산위원회의 성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개도국 원조,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3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1961년 선진 20개국이 주축이 되어 발족되었다. 이후 1994년 멕시코가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동안 25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선진국 간 경제클럽으로서 세계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OECD회원국의 기본원칙은 3가지로 집약된다. 정치에 있어서는 다원민주주의(pluralistic democracy),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이행(market economy), 무역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의 진전(free trade and payments)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회원국의 경제성장도모, 개도국 원조, 자유무역 확대를 3대 목적으로 설정한 OECD는 결국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선진국간 클럽(Consensus, Gentlemen's Agreement, Peer Pressure)이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회원국간의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협조,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즉 회원국 정부대표들이 회합

하여 각국 경제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상호 의견교환 및 조정을 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는 정책토의 활동을 통해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며 OECD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회원국 전체의 합의에 의한다. 이에 따라 특정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적 결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 적용의 유보가 가능하다.<sup>1</sup>

OECD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Council), 집행위원회, 사무국, 위원회(Committee), 부속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의 근간은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 중 각종 위원회는 다시 26개의 분야별 위원회와 6개의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200여개의 작업부(Working Party)와 전문가그룹이 있는데 수산위원회는 26개 분야별 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수산위원회는 1961년 OECD 설립과 동시에 발족한 위원회로서 설립배경은 1958년과 1960년의 UN해양법회의시 태동되기 시작한 200해리 경제수역과 같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즉 1958년 2월 24일부터 4월 27일과 1960년 3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개최된 두 차례의 제네바 회의의 결과 각회원국들은 OECD에 수산위원회의 설립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수산위원회의 회원국은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와 같은 내륙국 3국을 제외한 22개국으로서 주요 기능은 수산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이며, 연 2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OECD 수산위원회

<sup>1</sup> OECD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준(1990), 윤호섭(1993) 등의 글을 참고할 것.

회원국들은 1991년 기준 세계 수산물 생산의 28.8%(해면어업만으로는 33.1%), 수출의 54.4%, 수입의 84.8%를 점하는 등 세계 수산동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 국제포경위원회(IWC),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국제수산기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표 1) 및 (표 2). OECD 수산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는 임시전

문가그룹이 있어 정기총회에 앞서 정밀토론으로 총회의제를 검증하거나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한다. 임시전문가그룹 외에 별다른 하부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수산위원회의 의사결정은 OECD의 일반적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합의(Concensus) 또는 만장일치에 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의무로는 매년 각국의 수산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산시책이나 외국과의 협정 등 각국의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 수산위원회의

표 1 OECD 수산위원회 회원국별 총어획량 및 해면어획량 변화

단위: '천, %

구 분	총 어 획 량			해면 어획량	
	1982	1991	세계순위	1982	1991
호 주	166,408	227,300	51	164,102	222,993
벨 기 은	47,841	40,226	-	47,841	39,380
캐나다	1,403,325	1,529,779	15	1,345,582	1,479,434
덴마크	2,032,437	1,906,529	13	2,010,872	1,869,992
핀란드	118,840	82,813	-	85,839	75,446
프랑스	778,404	812,773	22	756,404	766,748
독일	549,794	300,164	42	510,443	253,364
그리스	104,660	149,020	58	95,604	138,944
아이슬란드	788,659	1,051,441	19	788,262	1,050,685
아일랜드	212,197	240,703	49	212,197	239,918
이태리	547,679	548,242	30	503,519	491,544
일본	10,826,542	9,306,827	2	10,605,111	9,102,845
네델란드	505,462	443,097	34	501,098	439,038
뉴질랜드	250,330	609,031	27	249,960	607,684
노르웨이	2,500,581	2,095,912	12	2,500,243	2,095,371
포르투갈	254,948	325,349	40	254,948	322,779
스페인	1,474,421	1,350,000	17	1,445,821	1,320,850
스웨덴	263,797	245,016	48	251,397	239,502
터키	503,457	364,640	38	469,841	317,424
영국	903,407	823,225	24	892,590	803,996
미국	4,032,513	5,473,321	6	3,915,284	5,198,325
합 계(A)	28,265,702	27,925,408		27,606,958	27,076,262
전세계(B)	76,767,700	96,925,900		68,309,900	81,748,700
A/B×100	36.8	28.8		40.4	33.1
한국	2,280,810	2,515,305	10	2,236,330	2,484,893

자료: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각연도.

표 2 OECD 수산위원회 회원국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 1991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금 액	세계순위	금 액	세계순위
호 주	578	21	360	20
벨 기에	228	36	779	12
캐나다	2,168	5	675	14
덴마크	2,302	3	1,148	9
핀란드	11	-	129	28
프랑스	926	13	2,926	3
독일	716	17	2,115	6
그리스	86	-	173	24
아이슬란드	1,280	8	14	-
아일랜드	308	31	98	30
이태리	249	34	2,690	5
일본	839	14	12,044	1
네델란드	1,356	7	977	11
뉴질랜드	461	26	37	46
노르웨이	2,282	4	307	21
포르투갈	287	32	758	13
스페인	773	16	2,748	4
스웨덴	168	40	441	17
터키	61	-	25	-
영국	1,122	11	1,912	7
미국	3,279	1	5,998	2
합계(A)	20,970		36,922	
전세계(B)	38,528		43,546	
A/B×100	54.4		84.8	
한국	1,491	6	568	15

자료: FAO, Yearbook of Fisheries Statistics, 1993.

결정 또는 합의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특별 활동참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원회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2.2. OECD 수산위원회의 활동

OECD 수산위원회는 오랫동안 국제어업 질서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서는 국제해양법과 관련한 많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이는 세계 어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200해리 체

제를 도래케함으로써 신해양질서를 확립하게 하였다. 또 이와 아울러 어획노력에 대한 국제적 과잉투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여 왔으며 이는 결국 어업자원관리라는 어업정책의 기본적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어 오늘날 까지 OECD 수산위원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OECD 수산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은 OECD 농업위원회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받아 어업에 있어서의 무역자유

화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시에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어업자원관리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수산부문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의 계수화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환경문제 역시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다.

### 2.2.1.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문제

어업에 있어서의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문제는 UR논의에 있어 보조금 문제가 농업부문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즉 UR 논의에서 농업부문의 보조금문제가 자유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업부문에서도 다양한 각종 국내조치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어업부문에서의 자유무역을 보다 확대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논의의 핵심과제는 각종 조치에 대한 계수화작업문제였으나, 각국의 다양한 어업제도와 어로방법의 차이에 따라 계수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채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어업에서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문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표 3), 이 중 첫번째가 국경조치이다. 국경조치에는 수입할당제(IQ), 관세, 수출보조금이 포함된다. 어업참여제한에 있어서는 노동력, 자본 및 어획제한과 외국어선의 입국 및 양륙제한이 포함되는데, 많은

표 3 OECD 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내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각종조치의 내용

구 분	내 용
국 경 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Q(Import Quota)</li> <li>◦ 관세(Tariff)</li> <li>◦ 수출보조금</li> </ul>
어업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자본, 어획제한,</li> <li>◦ 외국어선의 입국 및 양륙제한</li> </ul>
국 내 정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등에의 보조</li> <li>◦ 지역진흥자금 지원</li> <li>◦ 취업기회의 확보</li> <li>◦ 어업행위의 직접적인 보조</li> <li>◦ 어업재편성에 관한 경제적보조 (구조개선사업 등 포함)</li> <li>◦ 소비에 있어서의 경제적보조</li> <li>◦ 기타(시험연구 또는 시장조사에 있어서의 경제적보조)</li> </ul>

자료: OECD, *Report on the Study of the Economic Aspects of the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AGR/FI(94)18.

나라에서 어업에 대해서는 자본과 노동력의 자국주의를 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책에 있어서는 UR에 있어서 농업부문에서 논의된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부문이 포함되고 있다. 즉 지역진흥이나 어업재편성에 관한 경제적 보조, 소비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조, 시험연구나 시장조사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조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계수화의 방법으로서는 생산자보조금 상당액(PSE: Producer Subsidy Equivalent), 실효보조율(ERA: Effective Rate of Assistance), 무역왜곡상당액(TDE: Trade Distortion Equivalent), 생산자 및 소비자 잉여손실, 재정지출법, 각종 국내조치가 없을 시의 수출입간의 가격차이, 각종 국내조치가 없을 시의 동등무역 실현 상당액

(TEOS: Trade Equivalent Output Subsidy), 어획할당 및 면허에 의한 보조효과 (QLS: Quota or Licence Subsidy), 어업에의 지불 의도액(WTP: Willingness to Pay)의 9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어업부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가 자유무역에 있어서의 왜곡 정도를 계수화하고자 하는 데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어업부문에서의 투자증대가 반드시 생산량의 증대를 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업행위에의 참여제한의 계수화가 곤란하며, 농업의 경우와 같이 국제참조가격이 될만한 상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 2.2.2. 어업자원관리 문제

어업자원관리 문제는 OECD 수산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지만 200 해리 체제가 시작되고, 신국제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자원에 대한 과잉투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종래에는 단순히 어업자원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경계이동어업자원(straddling stock)에 대한 자원관리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OECD 수산위원회만의 논의는 아니었지만, FAO나 다른 어업

표 4 OECD 각국의 어업관리 실시 상황

국명	어업관리 실시 상황					
	TAC	IQ	ITQ	노력량	면허제	자주적조작
벨기예	○	○(IVQ)		○	○	
덴마크	○			○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아일랜드	○	○(IVQ)		○	○	
이탈리아	○			○	○	
네델란드	○			○		
영국	○			○		
포루투칼	○			○		
스페인	○			○		
노르웨이	80%	○		20%	○	
스웨덴	○	○		○	○	
터키						
핀란드				○	○(사유)	
아이슬란드	○		○		○	
호주	○		○(일부)	○		
뉴질랜드	○		○			
미국	○			○		
캐나다	○	24종		○	○	
일본				○	○	

자료: 1994년 2월 OECD 임시 전문가그룹 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구와의 연관에 의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작업과정을 보면 1992년 9월의 회의에서 IQ(어획량개별할당제)에 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1993년 9월에는 감시와 관련된 주제의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또 1993년 9월의 임시전문가위원회에서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자원관리(the efficient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를 국제협조하에 이루어야 한다는데 공동인식을 확립하였다.

한편 1994년 현재의 OECD 각국의 어업 관리 실시 상황을 보면 <표 4>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어업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TAC(Total Allowable Catch)와 노력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면 IQ와 ITQ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적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이후 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업자원관련 의제로서는 <표 5>과 같은 5개 쟁점사항별로 그룹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쟁점별 토론은 1995년 제75차 정기총회 이후 동년 제76차 정기총

회에서도 지속되었다.

### 2.2.3. 환경과 무역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OECD 환경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수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전체 환경부문 가운데 수산과 관련된 부문은 10~25% 가량 된다는 보고도 있지만(中西孝 1994, 11), 여하튼 OECD 수산위원회에 있어서 환경问题是 중요한 논의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 OECD 수산위원회의 활동으로서는 1992~1993년에 실시된 연안역 관리와 관련된 워크숍이 있다. 여기서는 어업의 활동장으로서 해면만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과 육역을 통합한 통합연안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이루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어장의 이용에 있어서도 어장이용자간의 어장 경합문제나 어획어종 경합문제 등에 대한 정책개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무역문제는 수산위원회에서만 별개로 논의될 성격은 아니지만 OECD 수산위원회의 궁

표 5 어업자원관련 쟁점사항별 토의 그룹

쟁점사항	토의 그룹
흔적 및 폐기문제	미국, 아이슬란드, 카나다, 호주
공동관리문제(Co-management)	일본, 네덜란드, 카나다
과잉어획문제(Over-Capacity)	EU회원국
다종어획문제(Multi-Capacity)	노르웨이, 이태리, 아이슬란드
유류오염문제(Spill-over)	스페인, 미국

자료: 1994년 2월 OECD 임시 전문가그룹 회의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극적인 활동목적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논의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왜곡된 무역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각종 조치문제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문제나 환경문제 등과 연관시켜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 2.3. 향후 활동계획과 전망

1993년 1월 제 70차 수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3년간(1994~1996년)의 활동에 대한 주제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주제를 미리 정하여 놓은 이유는 수산위원회 회원국의 어업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감에 따라 해결방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각 활동주제에 대하여 회원국 간에 미리 논의함으로써 향후 공동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논의된 활동방향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정책보고(monitoring), 어업자원관리(fish resource management), 어업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어업환경문제(fisheries and environment)가 그것이다.

이 중 정책보고문제는 1968년 이후 연차보고를 통해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상업적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각 회원국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는 어업관리, 생산과 무역 등에 관련된 제반 정부정책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94~96년의 활동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제반 정부정책 속에는 어업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즉, 최근들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식어업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와 같은 것은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어업자원관리문제는 많은 회원국에서 어업자원의 감소와 수익성저하와 같이, 상업적 어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어업자원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방법 모색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또한 책임있는 어업을 보장하고 어업부문을 수익성있는 산업으로서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상호협력방안이 크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어업자원관리문제가 향후 중요한 활동계획으로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다시 어업관리에 대한 경제적 보조(economic aspects of fisheries management)문제, 어업자원의 과잉어획문제, 관리시스템의 실행문제, 어업 및 기타 통계관련 문제의 네 가지가 포함되고 있다.

구조조정문제는 과잉어획으로 인한 어업생산가능성의 변화로 어업재편성의 문제가 많은 회원국사이에서 논의됨에 따라 어업과 관련된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함으로써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업재편성과정은 필연적으로 어업문제 뿐만 아니라 어촌사회에 대한 논의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업에 의한 고용문제도 포함된다. 구조조정문제는 반드시 어업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안역에 대한 수요증가'라는 측면과 상당한 부분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회원국들의 어업변화와 어업효과분석 등은

장·단기간에 있어 동일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경험을 서로 논의하여 각국 정책수립에 참고가 된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어업환경문제는 연안지역의 환경문제로 인식되었다. 즉 연안지역은 상업적어업 뿐만 아니라 유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어업외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안해역은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육지부에서의 오염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안해역의 이용을 둘러싸고 이용자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산위원회에서는 어업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연안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여하히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방향에 따라 실제 1992~94

년의 활동상황을 보면 <표 6>과 같다.

### 3. OECD 수산위원회 가입에 따른 한국 수산업의 영향분석

#### 3.1. OECD 가입에 따른 일반적 영향고찰

OECD는 기본적으로 회원제 성격을 지닌 폐쇄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된 활동방식이 비회원국들에게는 비공개리인 채 회원국 간에만 중요 정책과제의 분석, 평가 및 협조를 위한 토론을 벌임으로써 회원국간의 이해를 도모한다.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 전원의 자율적 의결 일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 집행방식도 결의, 권고, 합의 등 신사협정방식에 의하고 있다.

OECD에 가입시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의무와 권고적 의무, 그리고 자유화의 의무

표 6 OECD 수산위원회의 각 활동별 실행기간 변화

활동	1992			1993			1994			단위: 개월
	실행기간	자문기간	합계	실행기간	자문기간	합계	실행기간	자문기간	합계	
○정책보고	8		8	8		8	8		8	
○어업자원관리										
- 경제적 조성				4	1.5	5.5	4	1.5	5.5	
- 과잉어획문제				5	1	6	5	1	6	
- 감시문제				2		2	2		2	
○고위급 회담	4		4	2		2	5		5	
○연안역 수요증대문제	6	1	7	6		6	5		5	
○어업구조조정문제	4		4	2		2	3		3	
○마케팅				3		3	4		4	
○어업원조	13	1.5	14.5	4		4				
○무역 및 생산통계	1		1							
합계	36	2.5	38.5	36	2.5	38.5	36	2.5	38.5	

자료: OECD, *Fisheries Issues at the Turn of the Century*, AGR/FI(95)1.

표 7 OECD 가입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각종 의무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자유화의 의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목적의 지지</li> <li>◦ OECD 규범의 원칙적수락</li> <li>◦ 예산의 부담: GNP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TT 11조의 이행 (수출입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li> <li>◦ IMF 8조의 이행</li> <li>◦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무역의 거래자유화수락</li> <li>◦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수락</li> </ul>

세 가지가 그것인데, 일반적 의무는 OECD 목적의 지지, OECD 규범의 원칙적 수락, 일정부문 예산의 부담이 그것이다. 권고적의무는 GATT 11조 및 IMF 8조의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가 있으며, 자유화의 의무는 각종 자유화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표 7〉.

OECD에 가입할 경우 그 이해득실은 정책기조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 가지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선진국의 경제운용 경험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우리 경제 운용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뿐 아니라, 향후 원자력문제나 환경문제 등 경제외적인 각종의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측면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선진국의 경제운용 경험과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를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OECD가 GATT나 IMF 연차회의에 앞서

협상의 전단계로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선진국간의 공동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UR논의나 결정권이 있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보았듯이 사전에 선진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먼저 경제정책 운용상 자율성 제약의 가능성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서비스 및 자본시장 자유화추진에 있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때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 다음으로 후진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확대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현재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권고는 GNP의 0.7%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실제 OECD/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는 1993년 기준으로 볼 때 GNP의 0.33% 수준이나, 동년도의 우리 나라 원조수준은 0.05%에 불과하므로 OECD/DAC 회원국의 수준으로 상승시킨다고 할 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상실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일고 있지만, 산업전반적인 구조로 볼 때 개도국이라

는 입장에서 다소의 혜택을 누려왔던 점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3.2. 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고찰

#### 3.2.1. 긍정적 측면

OECD 가입에 따른 어업부문의 긍정적 측면으로서는 우선 선진각국 어업정책에 대한 정보입수의 유리성을 들 수 있다. 즉 OECD의 일반적 영향고찰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OECD는 기본적으로 선진국간의 멤버쉽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므로, 선진각국의 각종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 OECD는 일명 '문서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각 분야에 대해 방대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지만 비회원국에게는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OECD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의 각종 어업정책 및 운용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수하고 분석하여 어업정책에 활용한다면 그동안 대외정보에 취약하였던 국내어업정책에 활기를 떨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원양어업이 중요한 부문을 점하고 있고, 연근해어업에 있어서도 일본, 중국, 대만 등 인접국과의 국제적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선진국의 각종 어업정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완전수입 자유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부문의 국제무역동향에 대한 정보입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다음으로 다자간 어업정책의 방향을 사전

파악하여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UR도 OECD에서 사전에 중요한 내용이 조율된 후에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 200해리 경제수역과 같은 해양법회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OECD에서의 정책흐름을 미리 파악하였다면 쉽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UR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OECD 수산위원회에서는 어업부문의 경제적 보조와 관련한 문제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환경, 무역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OECD의 활동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어업현안들이 구체적인 다자간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OECD 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내용들은 UR에서 논의된 어업부문의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이때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미리 이루어져 있게 된다면, 국제 협상문제 발생시보다 용이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자간 어업정책의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 측면으로는 쌍무간 압력의 회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연안국들과 쌍무적 어업 협정을 맺어 왔으나, 최근 국제 어업환경은 점점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다자간 어업정책의 방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개별 어업협정에 대한 연안국들의 압력이 있을 시 이를 다자간 협상으로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8 수산 및 해양과 관련된 국제환경관련 협약 가입 상황 (1994. 8 현재)

구 분	내 용	발효일	가입국	우리나라가입
위싱턴협약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975. 5	120	1993.7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유전자자체도 자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종의 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1993.12	30	-
선박배출수에 관한 협약 (MARPOL)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기준 및 위반선박 제재, 사고보고 등을 규정	1983.10	73	1984.7
오존층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	프레온가스의 소비와 생산을 규제	1989. 1	119	1992.2
기후변화협약	탄산가스 등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를 위한 규정	1994. 3	51	1993.12
런던dumping 협약	일반 및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방지	1975. 8	72	1993.12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통제로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함.	1992. 5	52	1994.2

한편 OECD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바다자원 관리문제, 환경문제, 어업능률화 문제, 어업인력 논의문제 등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바다자원 관리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의 어업자원관리문제는 OECD 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자원관리문제를 원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이미 OECD에 가입하여 어업자원관리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공동의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중, 일 삼국에 의한 공동자원관리문제가 논의될 때, 일본과 원활한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연안역 종합개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근 연안역의 효율적 이용이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문제는 부분적인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OECD에서의 입장 개진으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국제규범의 설정가능성이 높은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유리할 것이다(표 8). 즉 향후 세계 경제질서는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크게 논의될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며, 이에 따른 규제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어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개별 환경관련협약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OECD 가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어업의 능률화를 이루는데도 유리한 점이 있다. 즉 어업자원과 어장이용을 둘러싼 어업자간의 분쟁해결 등을 통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어업자원의 효율적 이용방

표 9 수산물 수입자유화 현황

구 분	1991년까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품목수(개)	342	342	342	354	354	354	354
개방품목수(개)	235	255	275	308	314	331	354
자유화율(%)	68.7	74.5	80.4	87.0	88.7	93.5	100.0

자료: 수산청, 수산행정주요통계, 1995.

안에 대한 공동논의를 통해 능률적인 어업을 보다 쉽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업후계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어업인력 문제는 OECD 수산위원회의 대부분 회원국에서도 어업정책문제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결과 OECD 수산위원회의 최근 관심사 중의 하나가 어업인력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OECD 수산위원회에서의 공동논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편, 세번째와 네번째 측면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어업구조조정사업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두 문제에 작용하는 긍정적 측면은 폭넓은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2.2. 부정적 측면

OECD가입에 따른 일반적인 부정적 측면으로는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와 같은 자유화의 진전을 들 수 있다. 이 중 어업부문에 있어서의 무역자유화는 1989년 국제수지위원회에 의해 국제수지조항(BOP) 출입 판정을 받음으로써 3차에 걸쳐 수입개방예시를 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 UR과는 관계없이 완전 수입자유화예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OECD가입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문제는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1991년까지 235개 품목을 자유화함으로써 68.7%이던 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을 1997년까지는 354개 품목 모두를 자유화함으로써 100%로 완전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게 예정되어 있다(표 9).

문제는 자본자유화문제이다. 일반적 영향 고찰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자본자유화는 우리나라 각 경제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업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구체화시키기는 힘들지만, 원양어업과 대규모 근해어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특히 엔고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일본 어업자본이 대량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엔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인접된 어장에서의 조업이 전통적으로 매우 성행하였기 때문에.<sup>2</sup> 우리나라의

<sup>2</sup> 以西底引網漁業은 원양어업으로서 우리나라 서해를 주된 조업어장으로 하고 있는데, 1970년대 이전만 하여도 일본어업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1960년대에 비하여 어선 세력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서일본지역에서 중요한 어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근해어업(일본에서는 沖合漁業이라고 한다)으로서 선망어업과 저인망어업도 우리나라 남해와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요한 업종이 되고 있다.

어업자본투자를 통해 자국의 어업경영수지를 개선하려 할 것이다. 이는 자칫 어업부문에서의 자원침탈이라는 국면을 야기할 우려도 있게 된다.

또한 단기성자금의 유입에 의한 국내어업의 영향도 문제가 된다. 즉 어업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유입과 달리 운영자금에 대한 단기성자금이 유입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어업의 특성상 그러한 단기성자금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경우 단기성자금의 유입과 유출 정도에 의한 큰 금리차는 어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는 과거 객주에 의한 어업전대자금이 매우 성행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쉽게 알 수 있다.

두번째로 국내산업보호나 육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OECD 수산위원회는 몇 년 전부터 무역자유화를 왜곡할 수 있는 경제적보조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런 논의의 배경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UR과 같이 어업부문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의 왜곡을 막는 모든 국경조치, 어업참여제한, 각종 국내조치 등을 철폐하여 OECD의 근본취지인 자유무역을 보다 진전시키자는 데 있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UR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어업부문은 아직 UR과 같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물론 UR에서도 어업부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의 논의는 무역자유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어업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생산 및

판매구조를 망라한 새로운 질서논의는 미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부문에서의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논의가 OECD 수산위원회에서의 경제적보조 문제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OECD 수산위원회에서의 논의는 과거 UR에 앞서 OECD에서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언젠가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상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이때 OECD 수산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다면, 반대입장을 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OECD 수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어업부문에 있어서의 경제적보조 문제는 UR에서 논의된 문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훨씬 포괄적인데 그 중에서 각종 국내조치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즉 각종 국내조치 중 생산기반 및 하부시설 정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OECD 수산위원회에서 지역진흥이나 어업재편성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 중 국내산업보호와 육성과 관련된 조치라면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자율성 제약의 가능성은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어업은 오랜 역사로 인해 독특한 어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결과 그에 상응하는 복잡한 어업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OECD의 결정과 상치되는 국내정책은 모두 OECD 규범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자율성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네번째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부담발생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환경문제는 부분적으로

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으나,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업은 어선동력화의 진전과 각종 어구의 발달로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어선의 대형화와 고마력은 각종 유류오염의 위험을 높였으며, 냉동설비의 확충은 냉동매에 대한 규제강화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대형 어망의 파손과 유실 등은 생태계 보전차원에서 선진국의 규제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태평양에서의 유자망 금지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4. 한국 수산업의 발전방향

### 4.1. 연근해 어업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는 어업규제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관리 문제는 오늘날 어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는 궁극적으로 어업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어업발전에도 많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업규제정책이 이론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이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제도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한편 우리 나라를 둘러싼 각 연안국들도 최근 자원감소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하

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쟁적조업 체제하에서는 어업자원의 회복을 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또 일본의 한국 및 중국측 수역에 대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선포 이후,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한·중·일 모두 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하의 어업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수산정책 분야의 기본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국가들의 인식전환은 향후 국내어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OECD의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OECD수산위원회에의 가입은 연근해 어업자원관리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OECD 수산위원회에의 가입과 더불어 향후 연근해 어업자원관리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세부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변 수역국가들과의 자원관리에 대한 공동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계국간의 자원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상설기구가 아니더라도 정부관계자나 정부의 위임에 의한 권위있는 전문가단체에 의한 공식모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율적 자원관리가 각국간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누가 제의를 하느냐에 관계없이 각국

<sup>3</sup> 박성쾌, 육영수(1987)와 국립수산진흥원(1990) 등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의 어획노력량(어선선복량)은 MSE(Maximum Sustainable Effort: 최대지속적 어획노력량)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up>4</sup> 일본의 경우 1995년 봄 공동조업해역에 대해 국가별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다는 국내결의를 한 바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생산일변도에서 1980년대 이후 어업규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간의 협조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먼저 제의를 할 경우 일본은 OECD 회원국으로서 오랫동안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쿼터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어업권제도에 의한 어업규제방법이 논리적으로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쿼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TAC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로 수산업법 개정안에 TAC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쿼터 시스템의 실시는 기존의 어업권제도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TAC뿐만 아니라 IQ(Individual Quota System)나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System) 등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쿼터 시스템에 대한 여러 방법은 OECD 수산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왔을 뿐만 아니라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중·일 삼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적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시 및 조정기능의 회복 내지는 강화를 꾀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어업규제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적절한 어획노력량 유지를 위한 감시기능이 실패한데 원인이 있다. 즉 감시기능의 문제는 지정 어구, 구역, 어기 등 각종 규제사항의 위반을 통제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어획노력수준<sup>5</sup>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 감시문제는 어획량 규제방법이 도입될 경우 더 어렵게 되므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어떠한 어업규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조정기능의 강화문제는 어업자원관리의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지역이기주의가 문제시되는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업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어업조정사무소와 같이 어업에 있어 내무행정과 달리 해역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 4.2. 어업구조조정 구현

산업적으로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업구조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계층분화를 이루어 다양한 어업형태가 혼재하게 되었다.<sup>6</sup> 이는 일관된 어업정책수행을 어렵게 하여 많은 어업문제가 존속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향후 수산업을 보다

<sup>5</sup> 어선척수나 톤수와 같은 명목어획노력량이 아니라 제량화하기 힘든 실질어획노력량을 의미한다.

<sup>6</sup> 1990년의 어업센서스의 자료를 토대로 대규모(어선규모 80G/T 이상의 수산청장 허가어업), 중규모(어선규모 80G/T 미만의 수산청장 허가어업), 소규모(도지사 허가어업), 영세규모(공동어업 및 신고어업)로 구분한 결과 생산량 측면에서 각각 51.9%, 16.5%, 20.3%, 11.2%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어선톤수는 46.0%, 28.2%, 25.0%, 0.8%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체수(허가단위가 아닌 실사업체수)분포는 0.7%, 5.9%, 45.1%, 48.2%를 보이고 있다.(옥영수, 1993,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9, pp.70~71)

발전된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어업정책을 이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어업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어업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적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번째 단계로서 어업정책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화된 어업계 층을 동일한 어업정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업정책이 집약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어업정책대상자를 보다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어업정책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개념정립은 과거 어업생산정책이 증산 위주의 총량생산정책이었던데 비해 향후의 어업생산정책은 어종별 생산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시각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일반적인 어업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쿼터 시스템은 어종별 생산 및 관리정책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OECD 가입에 따른 각종 자유화조치의 결과 어업부문에 대한 자본이동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 연근해어업의 경영체가 자본규모나 경영 능력면에서 경쟁력이 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경쟁력있는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명확한 정책대상에 대해 일관된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단계로서 복잡다기하게 분화되어 있는 어업부문이나 어법을 보다 상위의 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업정책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향후 OECD 회원국으로서 각종 통계 및 어업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수행에 있어서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이 중 어업정책의 명확성유지는 보다 산업화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기조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통합된 어법의 내부에는 각어법 고유의 다양성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합에 따른 부분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문제 발생시 어업자간의 의견수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OECD에 가입할 경우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어업정책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때 어업정책으로 시행하기 곤란할 경우 각어법 내부의 다양한 그룹간에서 민간차원의 활동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3.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원양어업에 관한 향후 정책방향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어업부문에 있어서는 원양어업이 특히 그러하다. 원양어업에 있어서 건전한 재무구조가 필요한 것은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자유화의 영향을 원양어업부문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

<sup>7</sup> 필자는 앞의 책에서 어업정책 대상자를 기업형 어업, 중소형 어업, 어가형 어업의 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여기서의 어가형 어업이란 기존의 어업경영 단위와 가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야말로 “家” 단위의 어업경영체가 될 수 있다(옥영수, 앞의 책, pp.101~102)

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원양회사들이 객주자금과도 같은 전대자금에 의해 어획물을 불합리한 유통경로에 내맡겨 적정한 반입가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로 인한 외국자본의 범람은 어업경영의 예속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두번째로 정보체계의 정비와 공급을 들 수 있다.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각종 어업정보를 신속, 정확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어업생산과 판매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점은 OECD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방대한 정보입수후 그것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수집 및 분석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많은 나라에서 선포하고 있는 200해리 경제수역은 원양어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한·중·일 등 아직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지 않은 동북아에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문제가 국가별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방대한 정보수집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장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4.4. 어업경영의 안정화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공급의 안정화와 고도의 유통 시스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요소공급의 안정화는 다시 어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어업노동력과 어업자금의 안정적공급, 각종 공제제도의 확대시행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고도의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산지

및 소비자시장의 구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 산지유통문제는 대규모 양류항에 수산물 종합처리장이 확충되어야 한다. 소비지 유통문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강화시키고 냉동판매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미·일의 위해분석 및 중요관리점 제도(HACCP: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EU의 수산물 위생검사제도에 대한 국내적용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미·일과 EU의 대부분 나라가 OECD 회원국이므로 OECD 회원국이나 OECD 수산위원회를 통해 상기 정책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업자금의 안정적공급이나 각종 공제제도의 확대시행과 같은 문제는 OECD 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OECD 수산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논의자체로서 끝나고 있지만, 그것이 UR과 같은 미래의 국제질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나 공제제도 등과 같이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한 규제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가시화되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태준. 1990.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 OECD 가입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 수산청. 1995. 「수산행정 주요 통계」.
- 옥영수. 1993. 「어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7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호섭. 1993. 「OECD 가입과 한국 농업」. 연구보고 2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中西孝. 1994. "OECD 加盟國の水産業をめぐる諸問題," 「食料政策研究」79.
- OECD. 1993. *Terms of Reference and Project Outline for the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93)2. AGR / FI / EG.
- \_\_\_\_\_. 1993. *Draft Medium-term Priorities for the Three Year Period 1994~96 and Proposal for the 1994 Program of Work* (93)6. AGR/FI.
- \_\_\_\_\_. 1993. *Workshop on Enforcement Measures* (93)10. AGR/FI.
- \_\_\_\_\_. 1994. *Report on the Study of the Economic Aspects of the Management of Living Marine Resources* (94)18. AGR/FI.
- \_\_\_\_\_. 1995. *Fisheries Issues at the Turn of the Century* (95)1. AGR/FI.